

#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4. 22.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규식

**1. 제출자:** 성동구청장

## 2. 제안이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반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임명

2)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3)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를 전산시스템에 수집·저장

4)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요청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의 비식별화

라.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1)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관리 실태 등을 점검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3. 4. ~ 3.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12조 시행규칙까지 총 12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안 제5조 ~ 안 제6조)
  - 안 제5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음
- 데이터 수집기반 구축, 데이터 수집분야(안 제7조 ~ 안 제8조)
  - 안 제7조에서는 데이터를 수집·저장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 안 제8조에서는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를 전산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데이터의 수집·관리,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안 제9조 ~ 안 제10조)
  - 안 제9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 점검 규정을 두었음
- 다른 기관과의 협력, 시행규칙(안 제11조 ~ 안 제12조)

○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 능력을 크게 증대시켰으며,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과거 개인의 경험과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특히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민간데이터나 공공데이터 모두 민간 영역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주된 논의가 이루어져 왔었으나, 정부 및 공공 영역에서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활용하여 정책 효과성을 담보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에 기여하고자 2017년부터 입법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 10일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활용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본격적으로 지능형 서비스 제공, 데이터 공동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3조1)에 따라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 행정업무의 투명성·객관성·과학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한편, 데이터를 행정에 활용해야 하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인식이 중요하므로 체계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전 부서와 공공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또한 공공기관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 조치에도 적극 힘써야 할 것입니다.